

第 4554 號

1966 年 1 月 21 日
공 보 부 방
電話 72-7949

공보

1953 年 11 月 3 日
第 3 種 郵便物認可
대한공돈사 인쇄
電話 23-2150~9
一郡 5 원 30 錢

목 차

고 시

- 전설부공고제 24호(전주도시계획가로일부변경결정)
- 공 고
- 내무부공고제 3 호(기부금품모집기간연장허가)
- 농림부공고제 267호(식물성유박류수출주원요령)
- 전설부공고제 8 호(서울특별시역촌지구토지(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))
- 전설부공고제 9 호(서울특별시창동진구로지구획정리사업)
- 전설부공고제 10호(서울특별시화양지구토지(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))

- 전설부공고제 11호(서울특별시망우지구토지(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))
- 전설부공고제 12호(서울특별시연희지구토지(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))
- 고령부공고제 1,646호(제 292회 임시대기원국가시험시행)
- 사 령
- 인사발령
- 관 고
- 공시취고, 계권판결, 결정
- 획 보
- 총무(공무원사망)

고 시

◎전설부고시제 24호
전주도시계획 가로 일부 변경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한다.

관계 도서를 전주시에 비치하여 모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.

1967년 1월 21일

전설부장관 김 윤 기

다 음

변경조서(다음)

계획	종급	유별	번호	가로		시	점	종	경	비	고
				폭원	연 장						
既定	大路	2	1	33	5,940	金岩洞三巨里		八福洞都市計劃區域界			
	"	3	8	25	2,810	舊第 2 號廣場		牛牙洞都市計劃區域界		1100m=35m	1810m=25m
	"	3	10	"	860	金岩洞第 10 號廣場		仁後洞第 11 號廣場			
變更 新設	大路	1	1	35	9,400	八福洞都市計劃區域界		仁後洞都市計劃區域界		新設 860m	
既定	大路	3	2	25	8,760	兎山橋		三川洞都市計劃區域界		3460=25m	5300=35m
變更	"	1	2	35	5,300	16 號廣場					
既定	大路	3	7	25	1,800	全州橋		서학동都市計劃區域界		폭 1200m	600m=35m
	"	3	14	25	6,630	17 號廣場		24 號廣場		1480m=25m	5250m=35m
	"	3	12	25	5,360	13 號廣場		大路三類 11 號線		1520m=20m	3840m=35m
	中路	2	4	15	650	大路三類 1 號線		" 15 "			
	大路	3	6	25	5,030	全州橋		平和洞都市計劃區域界		大路三類 3 號	450m
										2200m=35m	
變更 新設	大路	1	3	35	15,640	東서학동都市計劃區域界		湖城洞都市計劃區域界		2380m=25m	新設 3050m
既定	大路	3	12	25	5,360	13 號廣場		大路三類 11 號線		3840m=35m	1520m=20m
變更	中路	1	9	20	1,520	大路三類 15 號線		中路二類 15 號			

공 고

◎내무부공고제 3호

서울신문사 사장 장태화가 신청한 기부금품 모집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한다.

1967년 1월 21일

내무부장관 엄 민 영

다 음

내지도 1477-17867(1966. 10. 25)로 허가한 파월장명 특별원호 기금의 모집기간을 1967년 2월 24일까지 연장 허가한다.

◎農林部公告第267號

1967年度 上半期貿易計劃에서 農林部長官推薦分으로 되어 있는 植物性油粕類(SITC 081. 320)에 대한 輸出推薦은 다음에 依한다.

1967年 1月 21日

農林部長官 朴 東 鼎

다 음

植物性油粕類輸出推薦要領

1. 輸出推薦은 「韓國製油工業協同組合」(以下 組合이라 한다)이 하고 組合은 다음에 依하여 外國換銀行의 長에게 推薦한다.
2. 가. 輸出推薦에 必要한 具備齊類
 - (1) 輸出推薦申請書
 - (2) 輸出契約書(寫本)
 - (3) 在庫 또는 現品을 確認할 수 있는 證明書나, 組合의 推薦에 있어서는 當部가 別途 指示하는 輸出限度量中에서 半期別로 輸出數量을 定한다.
3. 推薦을 받은 輸出業者가 外國換銀行의 長에게 輸出認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信用狀에 輸入國駐在 우리나라 公館長 또는 領事가 輸入國現地 時勤을 勤察하여 認證하는 適正價格證明을 添附하여야 한다.
4. 外國換銀行의 長은 組合의 推薦에 따라 輸出信用狀에 있는 前項의 海外公館長 또는 領事의 證明을 確認하고 輸出을 認證한다.

◎건설부공고제 8호

서울특별시 역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이를 공고한다.

1967년 1월 21일

건설부장관 김 윤 기

다 음

1. 사업명 : 서울특별시 역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2. 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3. 시행지구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역촌동·구산동·대조동·신사동·용암동·녹번동 각 1부
4. 시행면적 : 767, 271평
5. 시행기간 : 자 1967년 1월 21일~ 지 1970년 12월 31일
6. 기 타 : 관계 도면을 서울시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.

◎건설부공고제 9호

서울특별시 창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이를 공고한다.

1967년 1월 21일

건설부장관 김 윤 기

다 음

1. 사업명 : 서울특별시 창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2. 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3. 시행지구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유동·반동·쌍문동·창동 각 1부
4. 시행면적 : 762, 000평
5. 시행기간 : 자 1967년 1월 21일~ 지 1970년 12월 31일
6. 기 타 : 관계도면을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.

◎건설부공고제 10호

서울특별시 화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이를 공고한다.

1967년 1월 21일

건설부장관 김 윤 기

다 음

1. 사업명 : 서울특별시 화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2. 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3. 시행지구 :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양동 성수동 2가 모진동·구이동·능동·송정동·자양동·광장동 각 1부
4. 시행면적 : 638, 825, 80평
5. 시행기간 : 자 1967년 1월 21일~ 지 1970년 12월 31일
6. 기 타 : 관계 도면을 서울시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.

◎건설부공고제11호

서울특별시 망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이를 공고한다.

1967년 1월 21일

건설부장관 김 윤 기

다 음

1. 사업명: 서울특별시 망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2. 시행자: 서울특별시
3. 시행지구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내동·망우동·연동동·상봉동·중화동 각 1부
4. 시행면적: 1,144,292.50명
5. 시행기간: 자 1967년 1월 21일 ~ 지 1970년 12월 31일
6. 기타: 관계 도면을 서울시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총람에 공한다.

◎건설부공고제12호

서울특별시 연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이를 공고한다.

1967년 1월 21일

건설부장관 김 윤 기

다 음

1. 사업명: 서울특별시 연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2. 시행자: 서울특별시
3. 시행지구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부
4. 시행면적: 417,813.80명
5. 시행기간: 자 1967년 1월 21일 ~ 지 1970년 12월 31일
6. 기타: 관계도면을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총람에 공한다.

◎교통부공고제1,646호

제292회 인시 해기원 국가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한다.

1967년 1월 21일

교통부장관 안 경 모

다 음

1. 시험종류: 어선운종 1등 항해사 운종 1등 기관사 운종 2등항해사 및 운종 2등 기관사
2. 시험과목: 선박직원법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에 의함
3. 수험자격: 동령 제20조 내지 제22조에 의함

4. 제출서류: 가)해기원 국가시험 신청서
나)승선 이력증명서
다)해기원 면허 소지자는 그 사본
라)선박직원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함
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
마)사진 3매
바)소정의 수수료
5. 시험시일: 1967년 1월 29일 ~ 2월 2일
6. 시험장소: 군산 지방 해운국
7. 서류접수: 1967년 1월 27일까지 군산 지방해운국에 제출할 것.

사 령

○인사발령

◎1967년 1월 21일자

(제 2 국 제 1 과장)

감 사 관

박 관 명 (朴 寬 命)

제 1 국 제 4 과장에 보함

(제 1 국 제 4 과장)

감 사 관

이 중 태 (李 重 澤)

제 2 국 제 1 과장에 보함

(제 2 국 제 1 과)

부감사관

김 문 수 (金 文 秀)

제 2 국 제 4 과 근무를 명함

(제 2 국 제 4 과)

부감사관

한 중 태 (韓 重 澤)

제 2 국 제 1 과 근무를 명함

(제 2 국 제 1 과)

부감사관

유 월 선 (柳 元 善)

제 2 국 제 1 과 근무를 명함

(감사원장)

광 고

○공시회고

67. 카. 23

대구시 남구 남산동 252

신청인 김 덕 영 (金 德 永)

다음 증서의 소지인은 1967년 4월 28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만일 이를 해내려면 실권으로 증서부고의 신고가 되는 수가 있다.

1967년 1월 10일